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등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 주 군 수

2. 제정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변화 등에 따라 적용대상이 사라져 사문화(死文化)되었거나 유명무실 하게 된 조례를 일괄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각 부서별 개별 폐지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 제1조)

- 과거 호주제 및 호적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8.1.1. 시행) 및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119호, 2008.1.1. 시행)이 제정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의 위임사무로 법령에 해당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 성주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 (안 제2조)

- 성주군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임야를 인근의 산림계에 위탁·관리하게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읍면에서 산림계가 폐지되어 수십년간 유명무실한 조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안 제3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의 설치근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 않는 등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 성주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이 개정되어 현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제정 목적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 성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5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7.3.28.)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 성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안 제6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 촉진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1990.1.13.)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고 최근 6년간 집행 실적도 저조하여 남은채권과 회계별 잔액을 일반회계에 귀속 처리할 예정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의견 없음 (예고기간 : 2017.12.21. ~ 2018.1.10.)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증가, 지방분권 확산 및 권한이양 등으로 새로운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조례가 제정목적을 다하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자치법규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합니다.

○ 본 폐지 조례안은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 6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성주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성주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성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으며 「성주군 공유재산 임야관리위탁조례」,「성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성주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는 목적사업 및 업무가 종료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 법리 검토결과,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군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에 맞지않는 불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본 폐지 조례안을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